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54138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특별시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7508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게 한,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취득세 401,977,320원, 농어촌특별세 9,280,660원, 지방교육세 55,585,09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취득세 가산세 22,147,92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895,7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4

5,374,1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이○○

판사 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4

별지1

부동산 목록

1. 가. ○○시 ○○구 O 대 557.4㎡

나. 위 지상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1 170.58㎡

1층 262.59㎡

2층 287.6㎡

3층 230.43㎡

4층 187.53㎡

2. 가. ○○시 ○○구 P 대 294㎡

나. 위 지상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 경량철골조

지붕4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31.37㎡

2층 131.37㎡

3층 131.37㎡

4층 107.66㎡

지하층 63.42㎡. 끝.